

# 대전지방법원

## 제 1 형 사 부

### 판 결

사 건 2012노402 사기  
피 고 인 ○○○  
항 소 인 검사  
검 사 최소연(기소), 장유강(공판)  
원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2. 2. 8. 선고 2011고단4964 판결, 2011초기  
1674 배상명령  
판 결 선 고 2012. 7. 18.

### 주 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 이 유

####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가 아니어서 매도할 권한조차 없는 토지를 출소 후에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으로 일주일 만에 차용금을 갚을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하였고, 그 편취금을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한 합의금 및 벌금 납부 등에 사용하였는바, 비록 피해액이 아주 큰 금액은 아니기는 하나, 피고인이 출소하는 것에만 급급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무책임하게 피해자에게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해자에 대한 배신의 정도가 매우 중하여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해자는 자신의 집에 세들어사는 A의 소개로 순전히 피고인을 도우려는 생각에 피고인의 말을 믿고 1,000만 원을 대여한 것으로 과실이 없는 선량한 피해자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

용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재판장      판사      송인혁      \_\_\_\_\_

                 판사      김성훈      \_\_\_\_\_

                 판사      이효은      \_\_\_\_\_